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2. 20(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6. 3. 29(수)
- 다. 상정일자 : 2006. 3. 30(목) 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 3. 29)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중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평창군 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 중 감면 대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구분을 세분화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구분 기준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적재면적 2㎡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함.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 기간이 임대 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되었기에 재산세 등 감면 의무임대기간 관련 조문수정(안 제11조 제1항및 제2항)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경감하고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하던 조항에 대하여 지방세 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조문 삭제 및 수정(안 제15조, 제21조)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외국인투자 재산세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조의 2제1항 제2호의 5,6,7규정이 추가되었기에 조문수정(안 제 23조제1호)
-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50% 경감하는 조항을 2005년부터 주택부분이 분리되었기에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수정(안 제21조)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기한 삭제(조례안 제 25조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중 지방세감면규정에 따라 평창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조항 중 감면대상 승용차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차종구분을 세분화하여

- 적재면적 2㎡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였으며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임대 의무 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 규정되어
 - 재산세 등 감면 의무 임대기간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화물터미널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던 조항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였고
 - 외국인투자 재산세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호가 추가되어
 -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2005년부터 주택부분이 분리됨에 따라
 -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구분하였고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 기한이 초과되어 기한을 삭제하는 것임
- 다. 검토의견
- 기타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	-----

제출년월일 : 2006. 2 2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중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평창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 중 감면대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구분을 세분화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구분 기준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적재면적 2m²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함.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 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임대임대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 되었기에 재산세 등 감면 의무임대기간 관련 조문수정(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50%경감하고 화물터미널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하던 조항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조문삭제 및 수정 (안 제15조, 제21조)
- 라. 외국인투자 재산세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조의 2제1항제2호 의 5,6,7규정이 추가되었기에 조문수정(안 제 23조제1호)
- 마.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50% 경감하는 조항을 2005년부터 주택부분이 분리되었기에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수정(안 제21조)
- 바.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기한 삭제(조례안 제 25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관계법령 : 별첨
- 나.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입법예고 : 해당없음
- 라.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제23조제1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계법령

I. 지방세법 및 시행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23호(분리과세대상의 범위)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II. 기타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11.22)

1. 2. 생략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개정2005.12.1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